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제20조 관련)

총계	46
정무직 계	1
차관급	1
일반직 계	4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검찰사무관·사서사무관·시설사무관· 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경정 또는 별정직(5급 상당)	15
행정주사·전산주사·검찰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사·편사연 구사·경위 또는 별정직(6급 상당)	20
행정서기	2
운전서기보	1

비고

이 표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3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2명)은 법무부, 10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6명)은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고용노동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여성가족부, 2명(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토교통부, 3명(경정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